

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기획예산과)

의안번호	제 155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08. 29.)
의 안 명	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변경이유

- 가.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 예탁하여, 향후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
- 나.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축소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 계정) 예수금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
- 2) 설치목적 :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
- 3) 설치연도 : 2020. 12. 31.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

2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 : 2,633,043천원
- 일반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 : 40,000,000천원

다. 2023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5,018,104	42,933,043	37,914,939

2)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5,018,104	42,933,043	37,914,939	
예치금회수	2,059,408	2,059,408	-	
예수금수입	2,822,696	40,573,635	37,750,939	(증)일반회계 40,000백만원 (감)건축안전 2,249백만원
이자수입	136,000	300,000	164,000	(증)예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

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5,018,104	42,933,043	37,914,939	
예치금	5,018,104	42,933,043	37,914,939	(증)연도말 기금조성액

3)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조 성 액		사 용 액		2023년말 조성액(잔액)
42,933,043				42,933,043
- 예치금 : 2,059,408 - 예수금 : 40,573,635 - 이 자 : 300,000	-	0	=	2024년도 이월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4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,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기정예산 50억1,810만원보다 379억1,493만원(755.56%)이 증액된 429억3,304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.

○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」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7조부터 제12조(별첨 1)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²⁾에 따

1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2)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

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것임.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6. 9.]